



중국소송의 기본구조

28

- 심급구조 : 4급 2심 종심제

		최고인민법원	2심
2심	고급인민법원	고급인민법원	1심
1심	중급인민법원		

- 1심 법원이 어느 법원인가에 따라 상소심 법원이 달라지게 됨
예: 1심 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이었다면 2심 법원은 고급인민법원
예: 1심 법원이 고급인민법원이었다면 2심 법원은 최고인민법원

민사소송 개관

29

- ① 소장제출, 7일 이내 입안(立案)여부 결정, 피고에게 소장부분 송달
- ② 개정통지
- ③ 개정 전 증거조사
- ④ 개정심리 : 법정 변론, 당사자 진술, 증인 심문 등
- ⑤ 판결선고
- ⑥ **상소**: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,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장 제출
- ⑦ 2심 종결제도로 상소만 가능 (항소, 상고 개념 없음)
- ⑧ 항소는 인민검찰원에서 법원판결에 대한 사법심사제기 (재심) - 다름

29

민사소송 개관

30

소장제출 및 심사

- 1) 제소조건
 - ① 원고는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,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것
 - ② 명확한 피고가 있을 것
 - ③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수리범위에 속하고, 수소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것
- 2) 제소의 심사 및 수리
 - ① 입안(立案)은 인민법원이 원고의 제소를 수리하고, 소송절차가 개시됨을 의미.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제소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입안을 하고,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인민법원은 제소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, 7일 이내에 불수리의 재정을 한다. 만약, 원고의 제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정을 하도록 통지를 한 후, 다시 입안을 진행한다.

30

민사소송 개관

31

인민법원의 수리 이외의 조치

- ① 사건이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고지
- ② 당사자 사이 서면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고지
- ③ 당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소하도록 고지, 입안 후 본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
- ④ 다른 법원이 이미 수리하여 입안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수리 결정

31

판결집행

32

집행절차

- ① 집행요건: 효력법률문서(민사판결, 재정, 조정서, 중재재결서 등)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, 법률문서에 급부내용이 특정되어야 함.
- ② 집행관할
 - 인민법원이 작성한 재산집행내용을 구비한 민사판결, 재정, 조정서는 모두 제1심 인민법원이 집행
 - 중재기구가 작성한 법률효력을 갖는 중재판정, 재결서, 조정서는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에 있는 민사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이 관할

보전처분

33

본래 보전처분 중 행위금지명령 등 행위보전(行爲保全) 개념 없었음

처분금지 or 침해금지처분 등 없었음

- 다만 특허침해금지, 상표권침해금지처분 등 지재산 분야에서 특칙으로 운영

현행 민사소송법 (2012년 개정법) 행위보전제도 도입

- 장래 집행불능 및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조치 허용
- 본안소송이 이행소송이면 재산보전 또는 행위보전(작위 또는 부작위) 가능함
- 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"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기타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당사자의 기타 손해를 일으키는 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을 보전하도록 명령하고 일정행위를 명령하거나 혹은 금지할 수 있다."

중국법무, 국제계약, 계약분쟁, 지재산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